

1 ▶ 학생 생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안화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안화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31조, 제40조의3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에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표현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교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최대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 ② 학교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하지 않는 표현 및 게시물을 학생 문화의 창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제14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5조【사생활 자유의 권리】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육 목적상 학생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거쳐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교육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며,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육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의 및 보장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정에 참여한 학생생활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성적,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의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자기 정보 결정권의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단, 신성서 제출 후 정정이나 삭제에 관한 협의회에서 협의 후 학교장 결재를 통하여 실행한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탁,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빈곤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선도 처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선도 처분은 처분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선도 처분과 그 전후의 절차에 선도 처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선도 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도 처분 외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28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건전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

한 용도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4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29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컨설팅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폐기, 또는 당일 종례 후 반출	각 학년 교무실 물품보관 캐비닛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일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각 학년 부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적성 관리함 ·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일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빈환반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빈환반이 없는 경우 폐기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4.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폐기의 경우는 소유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각 학년 부장은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4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통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 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6조 【불용성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8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상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행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사)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가정학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9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1-2호로 정한다. 3-4호의 경우 교내 반입 및 소지를

8.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등
- ③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45조 【이성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며, 서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남녀학생 단둘이 만날 경우에는 항상 개방된 장소로 이용해야 한다.

제46조 【동아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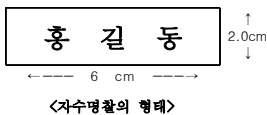
-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창의적 체험 및 방과 후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행사,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여가활동】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여가시간에는 학생들이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실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8조 【용의복장】

- 용의복장은 심리적 성장기에 있는 학생 개개의 인격을 보장하고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학교에서는 제42조에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할 수 있다. 착용 시,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1. 교복 및 생활복 상의 왼쪽 주머니 뒀게 위에 자수 명찰을 달고 등교 후에는 밖으로 내어 생활하고 하교 후에는 명찰을 주머니 속으로 넣는다. (단, 주머니가 없는 조끼 가슴 쪽에는 명찰을 달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단, 3-4호의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고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이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별 보관가방을 활용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담입교사가 보관한다.
- ③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④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절 교내 생활

제40조 【기본동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예호하고,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 폐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②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4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3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4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될 경우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홈페이지(<https://anhwa-m.goehs.kr>)
 3. 시 ·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2490-213)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2. 명찰의 색상

학년	자수 명찰		비 고
	바탕색	이름	
1학년	연하늘색	검정색	학년도 별로 순환
2학년	흰색	검정색	
3학년	노랑색	검정색	

<명찰 색상>

- ③ 실기 및 실습 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④ 실의화는 활동하기에 편하며 학생 신분과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⑤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가방은 학습용 도서나 문구용품을 담는 데 적합한 크기로 사용한다.
- ⑦ 교복을 입을 때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양말을 착용한다.
- ⑧ 실내 수업 중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제49조 【교복】

- ① 교복이라 함은 단체복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장교복, 편한교복(활동복,생활복)으로 나뉜다.
- ② 교복은 등복,준주복, 하복으로 구분하며, 상·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남학생	여학생	비고
정장교복	등복	상의	제킷(진한회색), 니트조끼(회색), 와이셔츠(흰색), 넥타이(자주색에 흰줄)	제킷(진한회색), 니트조끼(회색), 블라우스(흰색), 넥타이(자주색에 흰줄)	동원기 시 희망학생은 무채색의 무늬 없는 폴라티 착용 가능
		하의	바지(진한회색)	치마(진한회색), 바지(회색)	
	준주복	상의	등복에서 제킷 탈의	등복에서 제킷 탈의	
		하의	등복 하의와 동일	등복 하의와 동일	
	하복	상의	반팔 남복(흰색)	반팔 블라우스(흰색)	
		하의	바지(회색)	바지(회색), 치마(회색)	
편한교복	생활복	상의	반팔 티셔츠(곤색)	반팔 티셔츠(곤색)	
		하의	반팔 티셔츠(곤색)	반팔 티셔츠(곤색)	
	활동복	상의	완지퍼형 긴팔 티셔츠(회색)	완지퍼형 긴팔 티셔츠(회색)	
		하의	일자형 긴바지(회색)	일자형 긴바지(회색)	
		하의	라운드형 반팔티셔츠(회색)	라운드형 반팔티셔츠(회색)	

<계절별 교복의 기준>

- ③ 교복의 자세한 디자인은 본 규정의 <부칙>을 참조한다.
- ④ 교복은 단정한 복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하복 착용시 내의를 착용함을 권장한다.
 2. 정장교복 착용 시, 단추나 지퍼는 단정하게 잠근다.
 3. 정해진 교복의 크기나 모양을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는다.(단, 신체적 조건이나 성장에 의한 변형 허용)
 5. 학교 규정에 어긋난 교복은 즉시 수선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6. 동·하·춘추복은 기상 관계와 개인적 체질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혼용할 수 있다.

제50조【두발】 학생 두발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은 제한한다.

- ① 단순 미용을 위한 웨이브가 있는 파마와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두발과 관련된 진열 기구 및 제품을 학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제51조【기타】 기타 학교생활에 있어서 다음 규정을 따른다.

- ① 피부 보호를 위한 기본화장 이외에 색조 및 눈 화장을 금지한다.
- ② 문신 및 신체 부위에 화장을 하거나 구멍을 내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타투 피어싱)을 금지한다.
- ③ 색조 화장품 및 관련 색조 화장도구 소지를 금지한다.
- ④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 서적 등), 위해성 도구(공업용 공구, 칼 등), 주류, 도박 물품(카드, 화투, 게임 등) 등의 소지를 금지한다.
- ⑤ 건강에 해로운 중독성 물품(담배(전자담배 포함), 대마초, 마약 등)과 관련 도구(라이터 등) 소지를 금지한다.

제52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놀이동산,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을 준수한다.

제53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상담실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② 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9조【교의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의에서의 학생 비행의 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60조【사이버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 ⑨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⑩ 각종 시험(경기 시험 및 수행평가)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61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당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회합을 할 때
-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55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절 교의 생활

제56조【교의생활】 학생은 교의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력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알린다.
- ⑤ 교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전자담배 포함), 마약, 라이터 등 유해성 물품을 복용 및 소지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흥업소(유흥장, 음주 장소, 밤 10시 이후의 PC방 및 노래방(단, 보호자 동반 제외) 등)의 학생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57조【휴가 중 생활】

- ① 심신을 단련하며 교과와 복습 및 예습과 평상시 부족한 교과 실력의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생활 계획에 의거,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 계획)
- ② 평상시 학교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 수양과 자기 충실을 기하도록 힘써 전문을 넓히고, 부진한 교과와 보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수련)
- ③ 위생에 주의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학생으로서의 덕성을 높이도록 한다. (위생과 덕성)
- ④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 생활)
- ⑤ 학교의 과제는 소정의 방법으로 정성껏 이행하고 경기 소집일이나 임시 소집일에는 반드시 참가한다. (소집일)
- ⑥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지 신고)
- ⑦ 무전여행을 하거나 페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무전여행 금지)

제58조【보호자의 의무】

-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

제 5 장 자치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제62조【명칭】 본회는 안화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63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6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65조【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6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67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전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8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① 각 부는 총무부, 인성부, 학생인권부, 양성평등부, 문화부, 체육부, 안전부의 부서를 두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9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제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0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①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 ②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 ③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 ④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 ⑥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1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②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3학년 또는 2학년)
- ③ 각 부의 부원 2인(1, 2, 3학년)

제72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 ④ 각 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73조【활동】 본 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올바른 학습풍토 조성을 위한 학생 연구 활동
-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취미활동
- ③ 학생 복지 증진 및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제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 ⑤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⑥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특별활동
- ⑦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학생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⑧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 지도 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⑨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74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4장 2절의 「학생자치회장단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②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회장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 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12월 중에, 학생자치회 부장, 차장, 부원은 12월 ~ 1월 중에 대의원회 협의로 선출한다.
-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75조【임원의 해촉 및 재선거】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장단은 해촉 결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고, 그 외 임원은 재위촉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이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경우 (단, ‘학폭사안아님’, ‘조치없음’ 결정 제외)
3. 지역교육보호위원회에서 교내선도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76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인문자치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수석교사, 학생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하되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학생자치회장단 선거관리 규정

제77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율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3학년 부회장 및 2학년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79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2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 ~ 3학년 중에서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7 ~ 11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자치회장으로, 부위원장은 3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80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82조【투표자 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명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 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83조【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84조【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4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1부.
 3. 공약서 1부.
-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8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인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87조【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작성하여 위원회가 공지한 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88조【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 또는 기호 순서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 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89조【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90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 1. 경고 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 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94조【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회 3학년 부회장, 학생자치회 2학년 부회장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95조【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96조【보궐선거】

-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97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건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

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91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92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장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93조【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공고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자치회 운영위원단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명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 표를 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 표를 한 것

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98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반 선거와 관련하여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9조【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3절 학급 자치회장·부회장 선출규정

제100조【명칭】 이 회는 안화중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101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102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103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총무부, 인성부, 봉사부, 학생인권부, 양성평등부, 문화부, 체육부, 안전부의 부서를 두며, 각부 부장 1인을 선출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104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 ③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급 학생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 과반

- 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④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당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05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106조【임원의 해촉 및 재선거】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며, 해촉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교칙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이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경우(단, ‘학폭사안아님’, ‘조치없음’ 결정 제외)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②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90조 및 제98조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7조【임원의 임기】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8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의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15조【회의 개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일시, 장소, 개최이유 등)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11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7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의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선도 처분

제118조【선도 처분 원칙】 선도 처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사안 처리 이전에 예방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학생 및 학부모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⑥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⑦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9조【선도 처분의 심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회의 시 담임교사 및 담임교사, 학부모 또는 학생의 참석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보장한다.
 1.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선도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2. 회의 전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참석 여부를 문의한다.
 3. 학부모가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한다.
 4. 사안 처리 과정, 의견 제출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5.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도 처분 사유가 별도로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제120조【제심의 부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

2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09조【명칭】 이 소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10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 및 협의와 조정의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③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는 학생 선도도에 관한 제반사항

제2장 위원회의 조직

제112조【구성】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학생생활안전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학년부장 3인과 해당 학년 생활지도교사2, 진로상담교사를 위원으로 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해당 학년 생활지도교사1로 한다.

제1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4조【기피, 회피 절차】

- ① 제척 :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한다.
 - 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 나. 위원이 심의 대상 학생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학생이나 보호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피 : 학생 및 학부모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회피 :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부당한 선도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합당한 사유로 적법절차를 거쳐 타당성 있는 선도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부모의 제심의 운영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 심의 결정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5일 이내에 제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심의 청구를 받은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제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제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제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도 처분을 유보한다.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관련학생 및 참고인 출석 및 진술 청취를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제심의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1조【선도 처분의 종류와 기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교내봉사 : 2일 이상 5일(1일 2시간) 이내로 한다(휴일제외).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휴일제외). 사회봉사 실시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 1일 6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되,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1.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122조【선도 처분 시 부과내용 및 행정절차】 선도 처분의 종류별 부과내용과 행정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교내봉사(정규수업시간 외 실시)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독서 및 과제 검사
 3. 인성교육(특강 및 체육활동)
 4. 기타
- ② 사회봉사(봉사시간 인정 안됨)
 1. 노인정,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위탁봉사활동 및 견학을 실시한다.
 2. 반드시 해당기관의 이수증명서(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이수 증명서가 없으면 미인정결적으로 처리한다.
 4. 기타

③ 특별교육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급원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의 특별교육
 2. 수차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환경을 바꾸어 가정에서 학부모의 책임하에 학생선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3. 학교는 출석정지기간 동안의 과제물을 내주어야 하며, 학생은 과제물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제물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123조 【심의 확정】 학생 선도 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24조 【선도 처분 내용 통보】 선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처분 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선도에도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25조 【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①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6조 【선도 처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 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27조 【선도 처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선도 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행위	29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콘텐츠, 물건 등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학생	○	○	○	○
	30	도박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	○	○	○
	3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32	불건전한 서적, 파일(file) 및 기타 매체물을 소지, 유통, 시청, 탐독한 학생	○	○	○	○
제7조 정보통신	35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	○	○	○
	36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음란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	○	○	○
	37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 유포, 무단 도용한 학생	○	○	○	○
	38	인터넷 사기 행위, 부당거래, 부정 접속 및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 및 도용한 행위	○	○	○	○
제8조 기타	39	학교폭력 외의 사안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연루된 학생	○	○	○	○
	40	선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	○	○	○	○
	41	교원 외 학생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제128조 【선도 처분의 기준】 선도 처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학생 선도 기준표】

구분	항	내 용	선도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제1조 준법	1	지도교사 및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학생	○	○	○	○
	2	급식실, 특별실 등의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	○	○
	3	학교의 교구, 시설물,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무단 철거 및 절취하는 행위	○	○	○	○
	4	제 중명 및 사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5	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학생	○	○	○	○
	6	공공시설물을 파손, 절도, 절취, 무단 침입하거나 이에 동참 및 방조한 학생	○	○	○	○
	7	타인의 금품을 파손, 절취, 절도하거나 이에 동참 및 방조한 학생	○	○	○	○
	8	경찰서에 연행, 훈방되거나 비행으로 학교장에게 통보된 학생	○	○	○	○
	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0	공공의 질서를 해지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11	금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탑승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	○	○	○	○
	12	복장 및 용모 규정(두발, 화장, 피어싱, 문신, 액세서리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13	물품 분리 보관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	○	○
	14	위험한 물건이나 학적으로 금지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	○	○	○	○
제2조 수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상습적으로 불량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16	시험 시(정기 시험 및 수행평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	○	○	○	○
	17	합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교육활동(수업이나 시험 등)을 방해하거나 교육적 지도(개별학생 교육지도)를 불응한 학생	○	○	○	○
	18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19	수업 중 사용 금지 물품을 소지 및 사용한 학생	○	○	○	○
	20	수업과 관련된 교구, 시설물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	○	○	○	○
제3조 근대	2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합이 10회마다(단,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의 경우 제외)	○	○	○	○
	22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 10일마다(단,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의 경우 제외)	○	○	○	○
제4조 약물	23	음주 학생 및 주류 제공, 소지, 구입 및 권유, 판매, 방조한 학생	○	○	○	○
	24	흡연(유사담배 포함)을 하거나 담배 및 라이터(유사 담배 포함)를 소지한 학생 및 제공, 소지, 구입 및 권유, 판매 방조한 학생	○	○	○	○
	25	마약류 등 금지된 약물을 소지 및 권유하거나 매매 또는 복용한 학생	○	○	○	○
제5조 집단 행위	26	불법 집회 또는 불량 모임을 조직 및 가입, 권유하거나 참석한 학생	○	○	○	○
	27	집단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제6조 퇴배	28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학생신문 및 네티켓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유지)	○	○	○	○

제129조 【행동 성찰 쪽지와 회복적 성찰교실 운영】

- ① 전 교사는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이해성, 법적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행동 성찰 쪽지를 통해 주의 지도할 수 있다.(예, 기본 생활습관 및 예절, 준법, 수업 태도, 용의 복장 등)
- ② 전 교사는 지도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학생 확인 절차를 거쳐 담임교사에게 전달한다.
- ③ 행동 성찰 쪽지를 받은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료를 누락해서 보관하며 학생의 행동발달 누가 기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찰교실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 ④ 성찰 교실 이행에도 불성실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 선도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⑤ 행동 성찰 쪽지의 양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행동 성찰 쪽지 > 개정 후		
날 짜	20 년 월 일	교사 (인)
학 생	학년 반 번 이름 (인)	
사 유 (구체적 으로 기술)		

3 ▶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제130조 【개정 방법】 학생생활규정은 본교의 규정개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개정한다.

제131조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학생 대표 3명, 교원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2명, 전문가 1명으로 전제 9명으로 구성한다.

- ① 학생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구성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교원 위원은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 ③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총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 ④ 전문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 위원 및 인근 청소년상담센터, 대안교육시설, 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대학교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퇴직교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며 간사는 규정개정위원회 담당교사로 한다.

제13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3조【기능 및 역할】

- ①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마련
- ② 각종 문헌 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③ 각종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 관
- ④ 제·개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⑥ 기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제134조 【개정 절차】

- ① 사전 준비(위원회의 목적, 구성, 절차 등에 대해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매년 3월)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위원 선출 / 매년 3월)
- ③ 제·개정안 발의(학교 구성원의 발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이 변경된 경우)
- ④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안 마련
- ⑤ 학생, 학급자치회의, 학생대인의회, 학생자치회를 거쳐 학생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2. 학부모: 학부모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
3. 교직원: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교무회의, 교직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4. 학교 실정에 맞는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제·개정안 조정 및 합의안 마련)
- 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합의안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⑦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교육감) 보고
- ⑧ 개정안 공포 및 제·개정안개정 규정 20일 이상 안내(학급 게시,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대상에게 제·개정 규정 안내)
- ⑨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실시, 서약서 작성
- ⑩ 운영 결과 평가 및 환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분석

제135조 【개정안 발의】

- ① 위원회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제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6조 【개의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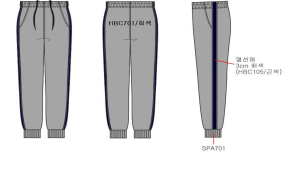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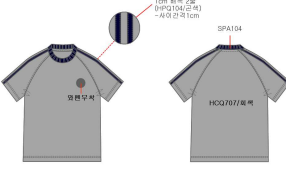
〈 정장교복의 동복 〉

분 류	디자인	비고
남학생 자켓		● 디자인: 테일러카라의 포켓주머니 ● 원단색: 옴란 - 차콜, 배색-멜란지 그레이 ● 소 계 : 길감 - 모60% / 폴리37% / 우레탄3%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안감은 특청표시, 문양이 없는 검정 계통) ● 위 칼라에 1cm 라인 들어감 ● 단 추 : 앞단추 3개, 팔목단추 2개 ● 마 크 : 학고 밑 중앙에 학고 마크 부착 ● 이튼류 후다 부착
바지		● 디자인: 신사룩 노르스탈일 바지 ● 소 계 : 모60% / 폴리에스테르40% ● 원단색: 차콜 ● 앞 주머니 2개, 뒷 주머니 2개 ● 바지장은 9 - 9.5인치 ★ 남, 여 공통
여학생 자켓		● 디자인: 테일러카라의 포켓주머니 ● 원단색: 옴란 - 차콜, 배색-멜란지 그레이 ● 소 계 : 길감 - 모60% / 폴리37% / 우레탄3%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안감은 특청표시, 문양이 없는 검정 계통) ● 위 칼라에 1cm 라인 들어감 ● 단 추 : 앞단추 3개, 팔목단추 2개 ● 마 크 : 학고 밑 중앙에 학고 마크 부착 ● 이튼류 후다 부착 ● 가장 50cm이상 (85사이즈 기준)
여학생 스커트		● 디자인: 외주름 스커트 ● 원단색: 차콜 ● 의 형 : 좌측 외주름 2개 ● 스테치 품판의 1/3(24cm 박음선은 7인치) ● 앞 주머니 2개 ● 소 계 : 길감 - 모60% / 폴리37% / 우레탄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남학생 셔츠		● 디자인: 기본 각 카라 와이셔츠 ● 원단색상 : 흰색 ● 소 계: 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여학생 블라우스		● 디자인: 기본 각카라 블라우스 ● 원단색상 : 흰색 ● 소 계: 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니트조끼		★ 남, 여 공통 (니트) ● 원단색상 : 차콜 ● 소 계: 모 50% / 아크릴 50%, 안티필링사 사용 ● 디자인: 민소목 V넥 스타일 ● 학고마크 부착

〈정장교복과 편한교복(생활복)의 하복〉

분 류		디자인	비고
남학생	셔츠		● 디자인: 기본 와이카라 셔츠 카라, 소매, 주머니 배색 프리세스라틴 ● 원단색상: 목판 - 흰색, 배색 - 회색 ● 소 재: 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 이음표후다 부착
	여학생		● 디자인: 기본 라운드칼라 블라우스 카라, 소매, 주머니 배색 프리세스라틴 ● 원단색상: 목판 - 흰색, 배색 - 회색 ● 소 재: 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 이음표후다 부착
하의	선택 1		● 디자인: 신사 노턱 스타일 ● 소 재 : 모 60% / 폴리 40% - 또는 폴리93% / 우레탄 7% ● 원단색상: 멜란지 그레이 ★ <u>남, 여 공통</u>
	선택 2		● 디자인: 신사 노턱 스타일 ● 소 재 : 모 60% / 폴리 40% - 또는 폴리93% / 우레탄 7% ● 원단색상: 멜란지 그레이 ★ <u>남, 여 공통</u>
	선택 3		● 디자인: 외주름 스킷트 ● 원단색상: 멜란지 그레이 ● 외 형: 좌측 외주름 2개 스래치 몸판의 1/3 ● 소 재: 모60% / 폴리에스테르40% -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u>여학생만 선택가능</u>
생활복 상의			● 원단색상: 목판 곤색 ● 배색 : 체크 ● 원 단 : KOLON, 기능성폴리100% ATB-UV SILVER (일광-물백스) ● 이음표후다 부착 ★ <u>남, 여 공통</u>

< 편한 교복(활동복)의 동복·하복 >

분 류	디자인	비 고
동 복		● 디자인: 원지퍼형 긴팔티셔츠, 학교마크 외입술주머니, 좌우측 1선(3cm)배색 ● 소 재 : 폴리에스터 20%, 면 80% ● 원단색상: 몸판- 멜란지그레이, 배색- 곤색
		● 디자인: 일자형 긴바지, 사선주머니, 허리끈 있음 좌우측 1선(3cm)배색 ● 소 재 : 폴리에스터 20%, 면 80% ● 원단색상: 몸판- 멜란지그레이, 배색- 곤색
하 복		● 디자인: 라운드형 반팔티셔츠, 학교마크 ● 소 재 : 폴리에스터 100% ● 원단색상: 몸판- 멜란지그레이, 배색- 곤색
		● 디자인: 일자형 반바지, 외입술지퍼주머니, 허리끈, 좌우측 2선(1cm)배색 ● 소 재 : 폴리에스터 100% ● 원단색상: 몸판- 곤색, 배색- 멜란지그레이